

학생 등의 선거운동 · 정당활동 관련 정치관계법 Q&A 안내

< 일러두기 >

- 본 정치관계법 Q&A는 학생의 선거운동·정당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례 위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 교육청, 학교, 학생 등 대상 안내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 차

I. 학생(18세)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Q&A	3
㉠ 할 수 있는 사례 관련 Q&A	3
(1) 투표할 수 있는 나이	3
(2) 선거운동이란?	3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	3
(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4
(5) 말로 하는 선거운동	4
(6)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4
(7)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4
(8)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5
(9)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	5
(10) 투표 인증샷 촬영 ①	5
(11) 투표 인증샷 촬영 ②	5
㉡ 할 수 없는 사례 관련 Q&A	6
(1)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보는 행위	6
(2) 선거운동을 위해 다른 교실에 가는 행위	6
(3) 인쇄물 나눠주는 행위	6
(4) 현수막을 사용하는 행위	6
(5)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	7
(6) 선거운동 노래를 틀어주는 행위	7
(7)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①	7
(8)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②	7
(9)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	7
(10) 투표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8
(11)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	8
(12) 투표인증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8
(13) 자원봉사자가 대가를 받는 행위	8
(14) 투표용지 모형을 사용한 지도도 조사	8
(15)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9

II. 학생(16~18세)의 당원활동과 관련된 Q&A 9

- (1) 정당가입 및 당비납부 9
- (2) 학생의 경선운동 ① 9
- (3) 학생의 경선운동 ② 10
- (4) 정당가입 권유시 주의점 ① 10
- (5) 정당가입 권유시 주의점 ② 10
- (6) 후원금 기부 방법 안내 10

III. 교원·학교의 활동과 관련된 Q&A 11

- (1)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11
- (2) 특정 후보자 공약사항 등 공유 11
- (3) 특정 후보자 지지 부탁 11
- (4) 학생 대상 특정 후보자 공약 등 언급 11
- (5) (예비)후보자 업적 홍보 12
- (6) 학생 대상 특정 후보자 홍보 부탁 12
- (7) 특정 후보자의 강연회 등 참석 권유 12
- (8)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권유 12
- (9) 후보자 지지도 조사 13
- (10) 투표한 후보자 조사 13
- (11) 당원 가입·후원금 기부 권유 등 13
- (12) 학교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13

IV. 후보자 등의 활동과 관련된 Q&A 13

- (1) 학교 안에 동아리를 만드는 행위 13
- (2) 학교 내 교실 등 방문 14
- (3)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 ① 14
- (4)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 ② 14
- (5) 학생들을 모이게 하고 지지호소 하는 행위 14

I 학생(18세)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Q&A

1 할 수 있는 사례 관련 Q&A

(1) 투표할 수 있는 나이

Q	고등학교 3학년이면 2025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나요?
A	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2007년 6월 4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할 수 있으나, 2007년 6월 5일 이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2) 선거운동이란?

Q	언론에서 18세 이상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궁금합니다.
A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로서, 예를 들어 친구에게 OOO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포함하며, 다른 질문에서도 동일합니다.)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OOO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하거나, 또는 OOO 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홍보 인쇄물을 나눠주는 것과 같이 후보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행위도 시기나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궁금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전화번호: 1390)로 연락하시면 담당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

Q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면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건가요?
A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Q	선거운동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선거운동은 법으로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25. 5. 12.(월) ~ 6. 2.(월)입니다.

(5) 말로 하는 선거운동

Q	이번 선거에서 000 후보자를 지지하는데, 반 친구에게 000 후보자를 찍어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 학생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6)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Q	000 후보자의 선거공약이 학교 현실에 잘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000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정리해서 이번 선거 때 000 후보자를 찍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생각입니다.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이라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나(선거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한 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Q	이번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000 후보자를 위해 소품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소품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품의 규격은 길이 25cm, 너비 25cm, 높이 25cm 이내이어야 하며 규격 범위 내의 소품을 여러 개 들고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 윗옷에 붙일 시에는 규격을 모두 합산해서 법상 규격 범위 이내여야 함.

(8)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Q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로 '000 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요?
A	18세 이상인 학생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9)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

Q	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000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제가 만든 후보자 지지 영상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URL주소 링크를 저희 반 친구들 단톡방에 올려도 되나요?
A	18세 이상인 학생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하여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동영상 등을 게시·전송할 수 없으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10) 투표 인증샷 촬영 ①

Q	인생 첫 투표 기념을 하고 싶은데, 사전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어도 되나요?
A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1) 투표 인증샷 촬영 ②

Q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참여 인증샷을 촬영하여 이를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퍼나르기)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인 학생은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올려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인 학생은 손가락으로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을 올리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2 할 수 없는 사례 관련 Q&A

(1)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보는 행위

Q	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학생입니다. 같은 반 친구가 저에게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할건지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넘어갔는데, 반복해서 물어보니 저도 좀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질문을 안 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친구에게는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것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정중히 거절하도록 합니다.

(2) 선거운동을 위해 다른 교실에 가는 행위

Q	평소 000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같은 반 친구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반도 계속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000 후보자를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A	질문과 같이 다른 교실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인쇄물 나눠주는 행위

Q	전부터 000 후보자의 대학입시와 관련된 공약을 찬성해 왔습니다. 000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학입시공약 홍보책자(000 후보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를 출력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이번 선거에서 000 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A	질문과 같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약이 기재된 인쇄물을 나눠주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4) 현수막을 사용하는 행위

Q	000 후보자의 교육정책이 맘에 들어 000 후보자를 위하여 '교육은 000 후보자에게!' 라는 현수막을 만들어 교문 위에 걸 수 있는지요?
A	질문과 같이 특정 후보자의 이름·기호가 기재된 현수막을 걸 수 없습니다.

(5)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

Q	이번 선거에서 000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는데, 선거에서 000 후보자를 위하여 후보자의 명칭·로고와 선거공약이 기재된 포스터를 만들어 학교 복도에 붙이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A	질문과 같이 특정 후보자의 명칭·로고와 선거공약이 기재된 포스터를 붙일 수 없습니다.

(6) 선거운동 노래를 틀어주는 행위

Q	000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는 18세 학생입니다. 000 후보자 선거유세노래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틀어놓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000 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지요?
A	스마트폰으로 선거유세노래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7)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①

Q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학교 그림 동아리에서 '00동아리는 이번 선거에서 000 후보자를 지지합니다.' 또는 '00동아리 대표(회장) 000은 이번 선거에서 000 후보자를 지지합니다.' 라는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A	'00동아리' 또는 '00동아리 대표(회장) 000'라는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8)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②

Q	학교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18세 학생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평소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000 후보자를 위해 '00동아리는 000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A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회장) 명칭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9)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

Q	전부터 000 후보자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000 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000 후보자가 학생들에게 불이익한 공약을 개발해서 공표하였다고 카카오톡을 통해 제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거짓말이지만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니 문제없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요?
A	질문과 같이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거짓의 사실을 퍼트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10) 투표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Q	같은 반 친구가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대신에 선거에서 000 후보자에게 투표해줘.'라고 하는데, 아이템을 받아도 괜찮나요?
A	후보자를 찍어주는 대가로 게임 아이템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11)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

Q	SNS를 이용하여 "○○○ 후보자가 당선되면 □□ 커피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아마 받게 되실 겁니다. 100명 선착순으로 꼭지주세요."라고 제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을 승낙해도 괜찮나요?
A	후보자를 위하여 기프티콘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겠다고 승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2) 투표인증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Q	제 친구가 투표인증 하면 무료 음료·식사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A	투표인증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13) 자원봉사자가 대가를 받는 행위

Q	후보자 선거연락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부터 좋아하는 후보자라 열심히 활동했는데, 선거연락소장님이 고맙다면서 문화상품권을 주셨습니다. 받아도 되는 건가요?
A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로 문화상품권, 돈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14) 투표용지 모형을 사용한 지지도 조사

Q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의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A	질문과 같이 실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의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15)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Q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전송·공유해도 되나요?
A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II 학생(16~18세)의 당원활동과 관련된 Q&A

(1) 정당가입 및 당비납부

Q	청소년 권익 향상에 힘쓰는 00정당을 위해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요?
A	16세 이상인 학생의 경우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생이 정당에 가입하려는 경우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당활동이라 하더라도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법한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2) 학생의 경선운동 ①

Q	00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00정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경선을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합산하여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경선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으며 경선운동시에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지요?
A	질문의 00정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경선과 같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하는 경선의 경우 경선운동시 18세 이상의 학생은 말(言)로 하거나 직접 전화통화 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도 경선운동을 할 수 있으며, 지지하는 경선 후보자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지지댓글을 다는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의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라 하더라도 질문과 같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선에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학생의 경선운동 ②

Q	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16세). 제가 속한 □□정당에서는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를 당원들만의 투표로 선출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경선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A	16세 이상의 학생도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정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정당별로 경선운동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경선운동방법에 관하여는 소속정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정당가입 권유시 주의점 ①

Q	OO정당 당원인 고등학생입니다. 소속 정당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친구들을 제가 활동하고 있는 OO정당에 가입시키고 싶은데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지요?
A	당원가입 권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당원가입 권유시에는 친구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5) 정당가입 권유시 주의점 ②

Q	OO정당 당원인 고등학생입니다. 친구가 저희 정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을 앞두고 자기도 후보자 경선에 참여하고 싶어 OO정당에 가입하고 싶은데 당비를 낼 돈이 없는 상황이라 당원인 제가 정당가입 대가로 대신 당비를 내주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질문과 같이 선거를 앞두고 당원이 정당에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대신 납부해주는 행위는 당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서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6) 후원금 기부 방법 안내

Q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제가 속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위하여 주위 친구들에게 후원회에 기부금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A	주위 친구들에게 말로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문자 메시지로 후원회 계좌, 홈페이지 주소를 전송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원회 기부방법을 안내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I 교원 · 학교의 활동과 관련된 Q&A

(1)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Q	교원이 특정 학생의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
A	질문과 같은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금지됩니다. 특히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2) 특정 후보자 공약사항 등 공유

Q	제가 담임으로 있는 반의 공약사항을 올리는 단톡방(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음)에 OOO 후보자의 공약사항, 선거벽보, 선거공보 파일을 올리면서, 다른 반의 학생들에게도 전달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후보자 지지 부탁

Q	학생에게 수업시간에 '집에 가서 부모님께 OOO 후보자를 찍자고 말씀드려라.' 라고 할 수 있는지요?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학생 대상 특정 후보자 공약 등 언급

Q	학생에게 '이번 선거에서 OOO 후보자의 교육공약이 좋으니 OOO 후보자를 선택해야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한다.'고 말해도 되는지요?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예비)후보자 업적 홍보

Q	학생들에게 (예비)후보자를 소개하고 업적을 홍보할 수 있는지요?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학생 대상 특정 후보자 홍보 부탁

Q	제가 아는 지인이 입후보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주위 친구들에게도 좋은 사람이라고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도 되는지요?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7) 특정 후보자의 강연회 등 참석 권유

Q	동아리 고문을 맡고 있는 교원입니다. 000 후보자가 참 좋은 사람 같은데, 동아리 학생들에게 000 후보자의 강연회·출판기념회 등 행사일정·개최장소가 있는 일정표를 보내고 000후보자의 공약이 좋은 것이 많으니 주말에 한 번 가서 들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도 되는지요?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권유

Q	제 아버지가 이번 대통령선거 선거연락소장이 되셨는데, 학생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를 돕고 싶은데, 춤이나 노래를 잘 하는 학생들에게 '000 후보자는 학생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 자원봉사자로 적극 참여해서 공연 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도 되는지요?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9) 후보자 지지도 조사

Q	수업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를 할 수 있는지요?
A	교원이 학생들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10) 투표한 후보자 조사

Q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8시 전에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는 반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출구조사 명목으로 각자 투표한 후보자를 표시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
A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1) 당원 가입·후원금 기부 권유 등

Q	학생들에게 제가 지지하는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기부방법을 알려줘도 되는지요?
A	교원이 학생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라고 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후원금 기부방법을 고지·안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2) 학교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Q	<input type="checkbox"/> 학교 교장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00당 000후보자를 초청하여 후보자의 정견·공약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을 참석 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A	학교에서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서 위법합니다.

IV 후보자 등의 활동과 관련된 Q&A

(1) 학교 안에 동아리를 만드는 행위

Q	학생들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하여 학교 안에 후보자 선거운동을 하는 동아리를 만들게 할 수 있나요?
A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아리를 만들게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 학교 내 교실 등 방문

Q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의 기호, 성명, 정당명 등이 기재된 점퍼를 착용하고 교무실 및 각 교실을 순회하며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호소를 할 수 있나요?
A	질문의 경우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해당합니다.

(3)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 ①

Q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 안으로 들어가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교 관리자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출입을 거부하거나 자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 ②

Q	대통령선거 선거연락소장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학교 운동장에 정차하고 확장장치로 지지·호소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교 관리자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출입을 거부하거나 자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전화번호: 1390)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학생들을 모이게 하고 지지호소 하는 행위

Q	학생들을 강당에 모이게 한 뒤, 후보자가 모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에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나요?
A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